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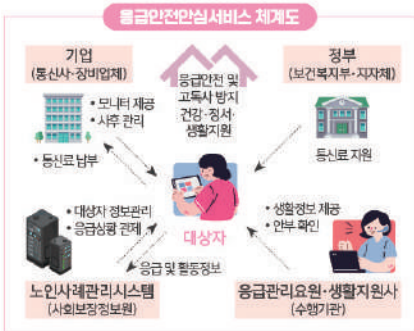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출입감지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지역센터(꿈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소방서를 연계함으로써 응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급·구조 및 안전확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체계도



신청절차

-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신청하기 (☎032-265-8585)
 - 해당 시군구 기관에 신청하기
- ※ 장비설치 및 관리비용은 모두 무료이며, 설치를 위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관기관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032-426-1015
인천광역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32-427-0622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032-876-3500
송림점자도서관	032-876-3504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	032-265-5033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서구지회	032-569-5031

www.ggumae.or.kr

꿈애^愛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꿈애^愛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210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 다복빌딩 12층
Tel. 032.872.5033 Fax. 032.872.5035
www.ggumae.or.kr

문의
032.872.503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서비스 신청

수급자	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시군구
활동지원 급여신청 (읍면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조사	수급자격 심사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신체활동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기타활동	그 밖의 제공서비스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사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성인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32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근로지원인 사업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이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서비스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내용

지체·뇌병변	•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시각	• 서류 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 출장 및 업무시 이동지원, 방문자 대응 등
청각·언어	• 수어통역 지원 •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
지적, 지체성	•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직무적용 등
기타 장애	• 개별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

근로지원인 교육

교육 유형	교육 기관
① 근로지원인 Start UP! 과정 수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교육
②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수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교육 위탁기관

* 근로지원인 Start UP! 과정 수료 후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필수 이수